

X
* $\frac{1}{2} \frac{1}{2} \frac{1}{2}$
1/2 1/2 1/2

राजसमिति

• 중립적이지 않음
 - 중립적이지 않음
 - 중립적이지 않음
 - 중립적이지 않음

a) 2/2001 - base program = Enduring values
motherhood & health.
b) 2/2002 - 2004

→ public relation
(awareness
online promotion)

• 16岁大童测试时:

• 7/6 북악산. 양악. 양악리에서 북악산으로 넘어감. 천문대(이정산), 76수리 (양악리. 2차), 이화산 (양악리) → 2차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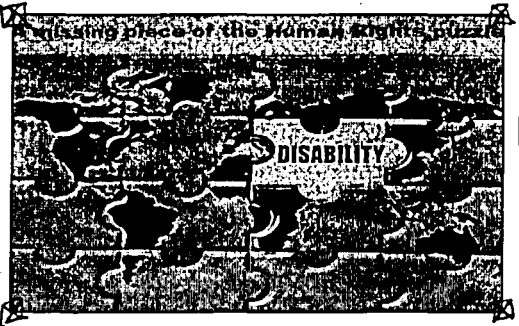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관련
GO/NGO 간담회 자료

7/6, 2005.

[illegible]

목 차

목차	
프러트가 (전세계 권력자들이 모이는 곳) 장학금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 우리 나라 장학금에 대한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	
제19조(접근성), 제20조(개인의 이동)	3
오사카 (한국의 권력자들이 모이는 곳) 에는, (아직도 있다) 공짜로 해주는 장학금에 대한 내용.	8



2. Анализ
 (Средствами Анализа)
 ? от-в. на вопросы.
 о фактах преступлений
 ЗДП

— Luk 3611. @. maver. —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1/22 지킴이 (추진연대) - 공개 토론
 2월 2차 : 정리된 내용

7/24 ESCAP 1/2A.

제19조(접근성), 제20조(개인의 이동)

배용호 초안위원/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1. 제19조(접근성)

■ 위킹그룹안에 대한 한국 의견

- 1) 위킹그룹안의 제19조 b)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삽입할 것. 기존의 c)는 d)로 됨.

c)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운영하고 운행하는 항공기, 선박, 철도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수단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하며,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d)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 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개발 운행하는 것

- 2) 추가 조항에 대한 사유 : 제19조 접근성은 제20조 개인이동에 대한 권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한국추진연대에서는 2003년도 방콕초안에 이동에 대한 권리를 새로 포함시켰으며, 이것을 위킹그룹초안에 까지 이끌어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방콕초안에서의 이동에 대한 권리가 개인의 이동을 포함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의미했던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개인의 보조 기구를 통한 이동으로 축소되어 위킹그룹안에 포함되었음. 따라서 처음 목표로 했던 대중교통등에 대한 접근 보장은 사라져버렸음. 이 부분은 접근성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에도 개인의 이동에 포함되기도 어려운 부분임. 따라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은 제19조 접근성에 보장해줄 수 밖에 없음. 한국추진연대에서 새로 c)와 d)를 삽입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이유 때문임.

■ 제19조(접근성)에 대한 최종 의견

- 1) EU와 아일랜드의 삭제 및 통합안에 대하여 :

EU와 아일랜드 등이 제19조 전체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며 다른 조항과 중복되므로 통합하거나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해 한국추진연대는 제19조는 장애인권리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다른 조항들은 기존 인권조약에도 있는 조항들이나 제19조, 제20조 등은 장애인권리조약에만 나오는 특수한 권리들임)이므로 이 조항들은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실질적인 효력을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반복되는 조항들은 적절히 조절하는데 동의하나 제19조 전체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삭제 및 통합에는 반대함.

- 2) 아일랜드의 a), b), g), h)항 삭제에 대한 의견 :

아일랜드는 19조 1항 전문이 a)와 b)의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판단아래 a)와 b)를 삭제하고자 하나, a)와 b)는 제19조 1항의 전문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이 부분의 삭제에 대해 반대함. g)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h)항의 경우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훈련의 제공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임. 따라서 이 부분의 삭제에도 반대함.

- 3) 제19조 2항의 b) 뒤에 다음과 같은 추가 조항을 삽입할 것을 제안함.

c)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운영하고 운행하는 항공기, 선박, 철도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수단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하며,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d)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 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개발 운영하는 것

4) 이스라엘의 제3항 추가에 대한 의견 :

이스라엘의 제3항은 주택에 대한 의견은 제1항 전문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부분은 접근성 가운데서도 독특한 주거환경의 문제이므로 이 문제만 특화해서 제3항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균형에 맞지 않음.

2. 제20조 (개인의 이동)

■ 워킹그룹초안에 대한 한국 의견

(b) 이동보조기구, 고안품, 보조 테크놀로지 등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보장하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민간 기구들로 하여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동성에 대해 착각하도록 장려하는 것;

⇒ 밑줄 부분을 다음으로 대치함. : 이동성에 대해 착각하도록 다양하고, 직간접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d)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전문직원들에게 이동 기술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

⇒ 전문직원을 모든 직원으로 대치함. :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이동 기술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

(f) 이동지원기구, 고안품, 보조 테크놀로지, 또 다른 유형의 지원과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

⇒ 밑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대치함. : 또 다른 유형의 지원과 서비스 등에 대해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정보를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추가 사유 :

b)항의 경우 장려할 뿐 아니라 직, 간접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지원 부분을 추가함.

d)항의 경우 일부 특정한 전문 직원 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기본적인 훈련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당사자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닌 모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함.

f)항의 경우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등 모든 장애인들이 이해가능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시청각 장애인은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음.

■ 제20조 (개인의 이동)에 대한 최종의견

1) EU 등의 제20조 전체 또는 일부 삭제 제안 : 개인의 이동은 처음 한국추진연대에서 의도했던 이동에 대한 권리보다는 축소되어 개인의 보조기구를 통한 이동이 되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의미성은 충분히 지니고 있음. 더구나 이 부분은 조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임. 따라서 EU등의 이 부분에 대한 삭제는 타당치 않음. 삭제 대해 반대함.

2) 바레인의 세금 면제에 대한 의견 : 보조기구 등에 대한 세금면제를 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국가가 모든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3)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b) 이동보조기구, 고안품, 보조 테크놀로지 등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보장하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민간 기구들로 하여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동성에 대해 참작하도록 장려하는 것:

⇒ 밑줄 부분을 다음으로 대치함 : 이동성에 대해 참작하도록 다양하고, 직간접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d)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전문직원들에게 이동 기술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

⇒ 전문직원을 모든 직원으로 대치함 :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이동 기술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

(f) 이동지원기구, 고안품, 보조 테크놀로지, 또 다른 유형의 지원과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

⇒ 밑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대치함 : 또 다른 유형의 지원과 서비스 등에 대해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정보를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수 화 언 어

한국농아인협회

[말 머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각종 인권문제와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제기한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의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의사소통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며, 정보접근 또한 정보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권리조약을 만들고, 그 내용 가운데 수화언어와 정보접근 등 접근권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데 일말의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현재 추진 중인 권리조약 가운데 수화언어의 독자성과 농정체성의 인정, 정보접근 등 접근권의 보장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적극 지지해주시고 내용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조약 검토의견]

1. 제13조 표현과 의견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1) 코스타리카의 의견처럼 제목을 변경하여 '권리'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코스타리카-"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성의 내용은 19조, 24조 등에 혼재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고,
- '표현과 의견의 자유'에서 주는 이미지와 같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라는 용어는 너무 약함

- 2) 또한 제목을 변경할 경우 현재 13조, 19조, 24조의 내용의 정리는 필요함
- 13조와 24조는 권리를 중심으로, 19조는 접근성을 중심으로 묶는 방안

2. 제17조 교육(EDUCATION)의 4.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children....에서 '수화나 점자에 능한 교사 채용을 보장'

- 1) '장애인교사나 수화나 점자에 능한 교사 채용을 제도화'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애인 교사 채용을 그리 반기는 편이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 당사자가 맡는 것이 장애인교육에 많은 잇점이 있다. 특히 감각장애인의 경우는 일반인 교사가 아무리 수화나 점자에 능해도 장애인의 심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 교사의 채용 문제나 이러한 문제가 보장 차원이 아닌 제도화 차원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3. 제18조 정치적·대중적 삶에의 참여(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 1) 대중적 정치적 참여의 보장에 있어서 감각장애인들이 겪는 곤란의 경우, 정치의 과정, 선거의 과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미디어 정치, 미디어 선거가 활성화 되면서 이러한 영향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 내용 추가 필요 : '정치적, 대중적 삶의 과정에의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 및 의사소통의 접근보장'

4. 제19조 접근성(Accessibility)의 (b) communications and other services, including electronic services.

- 1) 이 조항에서 지칭하는 'electronic services'는 너무 제한적이다. 과거 과학기술이 electronic services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확장된 첨단, 정보통신, 방송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조항 추가가 필요하다.

5. 제21조 건강과 재활에 대한 권리(RIGHT TO HEALTH AND REHABILITATION)의 (k) prevent unwanted medical and related

- 1) '원하지 않는 의학적 및 관련된 개입, 그리고 교정 외과수술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 한다' 이 조항을 유추, 보완하여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인공내이(인공달팽이관) 시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 '동의하지 않는 의학적 및 관련된 개입, 그리고 교정 외과수술이나 기구(器具)의 인체삽입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 한다'

6. 제24조 문화적 삶,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스포츠에 대한 참

여(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

- 1) 농문화와 정체성이 담긴 이 조항이 미치는 파장은 대단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어떠한 한이 있어도 고수되어야 하고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제13조, 제19조와의 관계성만 정리가 잘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장애여성단독조항(15bis)의 내용과 쟁점

김광이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정책위원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

I. 장애여성 단독 조항(15bis)의 내용

1. 장애여성 조항의 내용과 제안 과정

1) 한국추진연대 안

초안의 골자 및 취지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회의 장애를 가진 여성(안)은 각 국제조약의 형식과 내용, 위에서 기술한 국제기구와 NGO's의 권고 내용, 국내 여성관련법 등을 참고로 작성되었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모든 분야에서의 성 차별 없는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여성 평등권의 일반적 원칙을 담았다.

둘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도가 마련되기 위한 법 제정과 정책마련의 근거가 되는 조사사업에서 장애여성 항목을 삽입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사항에 있어 가장 핵심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도 입법조치와 제재를 담고 있다.

셋째, 접근권에서의 성별적 구축을 촉구하기 위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을 담았다. 장애인의 80%가 개발도상국에 있다고 한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이들 나라들에서 장애인에 관한 설비는 비용과 편의주의에 의해 물성적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장애여성들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모성권 및 노동권의 보장을 언급하였다.

다섯째, 빈곤으로부터의 보호이다. 여러 권고와 실천 강령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의 조치가 없다면 장애여성들은 다양한 불이익을 겪으며 살면서 가장 대표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다.

여섯째, 장애여성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조그룹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자에 대한 장애여성에 관한 인식교육을 담았다.

장애를 가진 여성들 :

1. 각 국가는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 장애를 이유로 또는 여성임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없는 동등한 권리 및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각 국가는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존엄을 보장받고, 완전한 참여를 통하여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진 여성 인지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제도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a) 장애와 여성 관련 그리고 사회보장 법률 등에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별도의 조항을 두어야 한다.
- (b) 각종 통계와 기초조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항상 장애를 가진 여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인 관련통계는 성별로 구축하고,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여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c)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성에 관한 권리는 물리적 안전과 성적 보호가 포함됨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d)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성역할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장애를 가진 여성의 선택에 따르는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이를 위하여 ;

- (i)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가정과 시설 및 지역사회 내에서 의 성적 착취,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ii) 일하는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자신의 신체관리에 대한 주관적 의사표시를 존중하고, 임신 출산에 의해 노동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

(e) 장애를 가진 여성들로 구성된 자조조직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f) 정부의 모든 부처 및 관련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는 장애를 가진 여성 인지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각 국가는 취약한 조건에 놓인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정부안 내용

한국정부의 제안 발언 요지

2004년 5월에 개최된 3차 특별위원회에서 한국정부는 제14조 논의가 끝나고 제15조 장애아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15조로서 장애를 가진 여성 조항의 신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한국은 위의 내용을 제16조 앞에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성 장애인들의 문제를 법률과 자료 수집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제15조(신) (a)항과 (b)항은 여성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독특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제안하는 것이고, (c), (d), (e)항은 어머니로서의 권리, 일할 권리에 대한 보호, 성적 착취, 학대, 폭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는 장애아동들이 받고 있는 권리와 비슷한 관심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제15조(신): 장애를 가진 여성들

1. 국가 당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들이 성 그리고(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 없이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2. 국가 당국은 성인지적 관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여성 장애인들이 자유, 안전, 자율 속에서 존엄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 (a) 여성 및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들에서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별개의 언급을 포함시킨다;
- (b) 사회 조사와 통계의 수집 노력들 속에 여성 장애인들을 통합시키고, 장애인들에 관한 성별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 (c) 임신, 출산, 산후의 건강보호, 육아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들의 특별한 필요들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여성 장애인들의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보호한다.
- (d) 여성 장애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들을 제공한다;
- (e) 여성 장애인들이 성적 착취, 가정과 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보장한다.

3)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회 안과 수정 제안된 정부안의 차이점

한국 정부가 수정하여 제안한 장애여성 조항의 내용은 너무나 일반적인 언급을 하고 있어서 장애여성의 필요성이 들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법률, 정책, 폭력예방 등은 실제로 지극히 일반적이다. 간결하면서 포괄적인 법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국제조약의 기술 특성상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의 경험에 기반한 인과관계의 서술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정부안에는 여러 권고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애여성에 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빈곤에 대한 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의 내용은 이미 본 조약 내의 개별조항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단독조항과의 내용 조율은 앞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과제이다.

2. 각국가의 찬반 의견들

1) 지지 의견

UN 3차 특별위원회의에서 장애여성 단독조항 신설에 대해 찬성한 국가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케냐, 우간다, 말리 등의 주로 아프리카 지역이다.

이들은 아동을 포함한 장애여성들은 그 어떤 집단보다 더 소외되어 있으며, 불균형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국제조약의 보편성의 원칙은 찬성하지만 성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장애인 연대의 이름으로 이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몇몇을 제외한 세계적 규모인 NGO's와 국제기구들도 장애여성 단독조항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들 기구들은 세계청각장애인연맹(WFD),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지뢰 피해자 생존자 네트워크(ISN)은 기존의 UN의 여성위원회(CEDAW)와 아동권리조약(CRC) 등은 장애여성 또는 장애아동의 필요와 권리들을 제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보편성의 원칙은 국가들의 인식 없이는 앞으로 움직여 나갈 수 없는 장애여성들이 겪는 추가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근거로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UN의 장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장애여성의 문제는 많은 차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중적 차별이라는 복합적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회들과 문화적 가치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단독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 반대의견

UN 3차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여성 단독조항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국가들은 유럽연합과 중동지역의 요르단, 예멘, 사우디아라비아이며, 인디아, 노르웨이, 세르비아, 몬테니그로이다.

이들이 단독조항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국제조약 특성상 보편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들은 대체로 장애여성들과 장애아동들 같은 집단이 실제적으로 위협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약은 성과보다는 장애인 전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장애인들을 포괄하고자 하는 조약의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반대의견으로서 서두를 열었던 유럽연합(EU)은 장애인 전체 공동체 내에서 세분화하여 다루는 제안들은 결과적인 조약의 구조적 문제점을 부각시킨다고 하면서, 하나의 원칙으로서 서문(전문)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장애여성 단독조항 신설을 반대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유럽연합과 요르단은 현재의 조약의 초안 15조인 장애아동 별도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반면, 인디아, 예멘,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동은 성인인 여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장애아동 별도의 조항을 지지하였다.

II. 단독 조항의 필요성

1. 메인 스트리밍에 대한 반론(상황적 필요성)

- 1) 장애여성은 장애인의 절반이다.
- 2) 장애여성이 겪는 차별은 형태는 같아도, 강도가 다르다.
- 3) 장애여성을 차별경험을 명확하고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필요하다.
- 4) 메인 스트리밍은 장애여성을 일반원칙들에만 포함시키는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

※ 메인 스트리밍 : 전체 조항을 검토하여 개별 조항내에 장애여성에 대한 내용을 넣자.

2. 법적 필요성

- 1) 각 조항 내에서는 실효적인 조망을 받기 어렵다.
- 2) 국가의 의무 사항으로 분명하게 적시되기 위해서는 단독 조항이 되어야 한다.
- 3) 실질적 평등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 우대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장애여성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 1) 제2조 일반원칙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과 남성의 평등 조항이 추가 신설 제안
- 2) 제4조 국가의 의무 조항에서의 새로운 항 신설 제안
- 3) 단독 조항으로서 장애여성(15bis) 수정 제안

장애여성 조항관련 한국활동 및 국제흐름

김미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

1. 제2차 Ad-Hoc Committee 참가: Women' Forum 참가

일 시: New York, 16-27 June 2003

참가자: 김미연

활동내용: 포럼 참여

2. UN ESCAP Workshop on Women and Disability 참가

일 시: 18-22 August 2003, Bangkok, Thailand

참가자: 이예자

활동내용: 워크샵 참여

3.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워킹그룹 참가 보고대회 및 공개토론회 에서 "장애여성조항 신설"제안

일 시: 2004. 3. 12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참가자: 김광이

활동내용: 장애여성조항 제안

4.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3차 특별위원회 참가

일 시: New York, 24 May-4 June 2004

참가자: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이예자, 최경숙, 김광이, 허혜숙

활동내용: 15bis 제안 (우리 정부가 제안 하도록 역할)

5.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5차 특별위원회 참가

일 시: New York, 24 Jan -24 Feb. 2005

참가자: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최경숙, 김광이, 김미연

활동내용: 5th에서의 15 (bis)를 위한 한국장애여성들의 활동

6. 제5차 특별위원회의 일정 및 장애여성 단독조항 신설을 위한 로비 활동

가. 장애여성조항 내용 및 쟁점 사항들

Gender Mainstreaming 과 Specific Article

What is a Gender Perspective

What is a difference between gender perspective and disabled women' gender perspective

나. Side Event 개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위해 하나되는 세계장애여성 "Uwwd(United Women With Disabilities) for the Convention"

일 시: 2005. 2. 3 오후 1시 15분 -2시 30분

장 소: 유엔 내 컨퍼런스룸 C

주 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위해 하나되는 세계장애여성

Uwwd(United Women With Disabilities)

공동대표: 키키노르스트롬(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스웨덴, 워킹그룹실무위원), 리사(국제농아인협회회장, 핀란드, 워킹그룹실무위원)

발 표 자: 유엔 "장애인을 위한 국제표준규칙"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 대표 강경화공사,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대표 이익섭 회장, 유디스 휴먼 전, 미국특수교육차관보, 현 월드뱅크, 키키노르스트롬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7. 5차 특별위원회 이후 진행 사항

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위한 국제장애인연대 간부 회의(IDC) 활동 참여 IDC의15bis 코디네이터 지명 (2005년 2월 4일 오후 3시)

: 한국(김미주)

IDC 야후그룹 온라인 전 세계 IDC 토론 주제:

나. 기간 : 2005년 5월 23일 6월 3일

다. 제안된 아티클 :

Koran Gov. 15bis(한국정부의 안)

1.State Parties undertake to ensure the enjoyment of full and equal rights and freedoms by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equal particip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without any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their gender and/or disabilities.

2. State Parties shall take the following steps from a gender perspective so as to ensure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are able to live with dignity in freedom, safety, and autonomy

(a) Include a separate reference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laws pertaining to wom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

(b) Incorporate women with disabilities in social surveys and statistics collection efforts and collect gender-disaggregated data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c) Protect the motherhood of women with disabilities by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policies and programs for assistance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special need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pregnancy, childbirth and postpartum health care and child-care;

(d) Ensure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are not deprived of their right to work due to their pregnancy or childbirth, and provide the necessary assistances in this regard;

(e) Ensure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are protected from sexual exploitation, abuse and violence at home, institutional facilities and communities.

Korean NGO 15bis.(한국NGO의 안 첫 번째 버전)

1th version

1. State Parties shall ensure the full and equal rights and particip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without any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and/or disabilities and otherwise consistent with provisions in this convention.

2. State Parties shall take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to ensure the full enjoyment, freedom, safety and dignity of women with disabilities. To that end State Parties shall:

(a) protect the right of motherhood of women with disabilities;

(b) support women with disabilities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provide the necessary assistance in this regard;

(c) ensure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are protected from sexual exploitation, abuse and violence at home, in public and in their communities;

(d) ensure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are not deprived of their right to work on the basis of gender;

assist women with disabilities to overcome poverty and provide a realistic opportunity for independent economic viability;

3. State Parties recognizes the right of women with disabilities to live a life in autonomy. To this end State Parties shall:

(a) collect gender-disaggregated data in surveys and statistics with a specific reference on women with disabilities;

(b) develop and disseminate policies and programs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postpartum health care and child-care for assistance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special needs of women with

disabilities;

(c) provide assistance to and facilitate networking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to overcome isolation;

한국NGO의 안 (두번째 버전)

2 th version

PROPOSED NEW ARTICLE 15(BIS) : WOMEN WITH DISABILITIES

1. State Parties undertake to ensure the enjoyment of full and equal rights and freedoms by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equal particip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without any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their gender and/or disabilities.

2. State Parties shall take the following steps from a gender perspective so as to ensure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are able to live with dignity in freedom, safety, and autonomy:

(a) Include a separate reference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laws pertaining to wom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b) Incorporate women with disabilities in social surveys and statistics collection efforts and collect gender-disaggregated data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c) Protect the motherhood of women with disabilities by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policies and programs for assistance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special need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pregnancy, childbirth and postpartum health care and child-care

(d) Ensure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are not deprived of their right to work due to their pregnancy or childbirth, and provide the necessary assistances in this regard;

(e) Ensure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are protected from sexual exploitation, abuse and violence at home, institutional facilities and communities.

(f) Incorporate sensitivity training for government personnel of welfare, social services and related agencies, to alert them to the unique hardships of women with disabilities.

(g) Assist women with disabilities to overcome poverty and provide realistic opportunity for independent economic viability.

(h) Provide assistance for women with disabilities to come out of isolation and enter civil society. To this end, governments should facilitate networking among disabled women.

라. 참여 현황 : 88 메일

마. 주요 참여자 : : Frank Hall-Bentick, Kicki Norstrom, Tina Minkowitz, Sigrid Arnade, Stefan tromel, Heidi Forrest, Frank Mulcahy, Corcoran Maurice, Mijoo, Kim

바. 토론 주요 쟁점

a. 장애여성 단독 조항 제정의 필요성 (한국 주장)

b. 조약 전체의 메인 스트리밍(Mainstreaming) : 전체 조약에 모두 들어가도록 한다. (독일 주장)

c. 짧고 강력한 15bis (IDC 중재안)

사. 제안된 전략

- a. Double Approach(더블 어프로치) : 15bis, Mainstreaming 모두 준비, 여기서 15bis의 성격과 강도 선택이 매우 중요
- b. 수직적 검토 : 장애여성의 욕구를 먼저 정리 한 후 전문과 일반원리 그리고 15bis에 들어갈 내용 등을 정리한 후 다른 관계 많은 조항(예: 가족, 폭력) 등 관련 조항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해서 가급적 관련 조항에 넣는다.

8. IDC 내 15bis 아티클 합의문 작성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제안

가. 필요성

15bis 합의문이 작성 안되었으므로 전 세계 장애여성들 참여가 더 필요하다.
장애여성 조항의 광범위성과 총체성 특징으로 보다 깊은 논의 필요
2주의 논의는 부족하며 구체적 조항 내용으로 들어가지 못함

나. 제안된 아티클 15bis

키키의 Shorts & Strong Version(6월 6일)

15 bis Women with disabilities (6 June by kicki)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e subject to multiple discrimination in policies, family relations, education, training, health care, rehabilitation, employment, property, ownership rights and inheritance.

State Parties ensure that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re guaranteed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without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State Parties shall secure that law,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guarantee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without discrimination, the right to freedom, safety, autonomy, independence, dignity as is guaranteed others;

State Parties shall therefore develop special measures and policies to ensure tha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enjoy the same rights and recognition as others on the basis of their gender and/or disability. To this effect State Parties shall ensure that:

- a)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enjoy the freedom from abuse, violence, sexual exploitation and marginalization;
- b) all programmes and measures targeting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e fully accessible and gender mainstreamed;
- c) women with disabilities overcome poverty and are provided with a realistic opportunity for an independent economic viability;

다. 토론 주재자: 키키노르스트롬, 김미주

라. 기간: 6월 12일 21일

키키의 최근 수정 안(6월 23일)

15 bis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23 June

1. States Parties acknowledge tha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of all ages are subject to intersecting discrimination on the ground of

disability and gender in all areas of life. State Parties shall therefore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in this convention.

2. State Parties ensure that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re guaranteed to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in the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or any other fields. To that end State Parties shall ensure that:

a) law,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guarantee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equal exercise and enjoyment of rights as others in all areas of lif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perty, ownership and inheritance

b)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e, without discrimination entitled to freedom, safety, autonomy, independence, respect and dign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3. State Parties shall develop pro-active measures and policies to ensure tha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of all ages enjoy the same opportunities and rights as others. To this effect State Parties shall ensure tha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enjoy:

a) full access to programs and measures related to areas such as, but not limited to information, finances, family relations, education, training, health care,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b) the right to motherhood, support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postpartum health care and child-care and necessary assistance in this regard;

c) freedom from abuse, violence, sexual exploitation and marginalization

d) full access to development programs such as microfinance and independent economic viability programs in order to overcome poverty and finance dependence

c) all programmes and measures which are targeting the general population, both those that are gender mainstreamed and those that are gender specific are fully accessible to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마. 향후 계획 : 7월 30일 뉴욕에서 만나서 최종 합의문 작성 (예정)